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 도입 〉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44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6.
3.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검사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표·유포·누설한 경우 피의자가 공개된 피의사실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 등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공개된 피의사실 내용 및 공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의사실공표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5조의2(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 ①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 유포, 누설한 경우에 피의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이미 공표, 유포, 누설된 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5조의3(동전) ① 법원은 전조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등금지를 명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개되는 내용이 일반적 절차적 사실에 한정되어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 2. 범인 검거 및 범죄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②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등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이 있기 전이라도 이미 공표, 유포, 누설된 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형법」 제126조¹⁾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음.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사실이 공개될 경우, 아직 공판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유죄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추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 인권이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판사도 공소장이 아닌 언론 등을 통해 먼저 사건을 접하여 재판 시작 전에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피의자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명문화되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해당 사건이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음.²⁾

1)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자가 해당 피의사실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 등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기능 행사과정에서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최근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피의자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유명무실해지는 등의 사례³⁾가 반복되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쉽게 공표하는 관행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⁴⁾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도 일종의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피의자 권리구제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피의자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국가나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간접적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개정안은 공표된 피의사실 자체를 삭제하고 피의사실 추가 공개를 직접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측면은 있음.

2)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2019. 5. 27.)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총 347건의 사건 중 기소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3) 2023년 12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명 배우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24년 1월 12일 해당 사건의 무분별한 수사 관련 정보 유출 및 경쟁적 언론 보도에 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음.

4) 참고로, 개정안과 함께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형법」 제126조를 개정하여 ① 피의사실의 ‘공표’ 외에도 ‘유포, 누설’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②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③ 개정안에 따른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943호)이 발의되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① 피의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이미 피의사실이 공표·유포·누설된 이후에야 법원에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② 금지명령 청구 이후 법원이 실제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피의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크며, ③ 공개된 피의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삭제 명령을 하더라도 모든 언론 기사 및 온라인상의 관련 게시물까지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도 결국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의자 권리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 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표·유포·누설한 경우에 피의자가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명령할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의 수범 대상도 이들 수사기관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명령의 내용적 범위 또한 수사기관이 공표·유포·누설한 것 자체의 삭제 및 향후 수사기관의 공표 등 금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반면,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 외에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는 물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파·확산시킨 일반 국민까지 금지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인바,⁵⁾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 밖에도 개정안은 일부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개정안은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의 근거 조항을 공판 개시 전 증거보전 청구와 그 절차, 관련 서류 열람 등에 관한 제1편(총칙) 제15장(증거보전) 내에 신설하려는 것이나,⁶⁾ 해당 장에 증거보전 청구와 관련성이 없는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1편에 별도 장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⁷⁾

5) 다만, 이 경우 법원의 명령이 당사자(피의자 및 수사기관 등)를 넘어 사실상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금지명령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그에 앞서 금지명령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943호)은 법원의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같이 중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나아가, 피의사실공표 등 금지명령의 대상에 언론 등을 포함할 경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피의 사실이 포함된 기사 및 게시물의 삭제 의무 및 추가적인 보도행위가 금지되는바,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관계 및 체계적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6)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048

-
- 7)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를 둔 취지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명예권 등 권리보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개정안의 내용을 제2편(제1심) 제1장(수사)에 피의자의 권리 관련 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